

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관할
(제15조의2 관련)

윤리위원회	관할 공무원
특별시·광역시· 특별자치시·도· 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	가. 시·군·구 의회의원 나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·직위의 별정직·연구직·지도직 등 공무원,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다. 시·군·구 또는 시·군·구의회 소속 4급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·직위의 별정직·연구직·지도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마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·직원 및 그 퇴직자
시·군·구 공직자윤리위원회	가. 시·군·구 또는 시·군·구의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·직위의 별정직·연구직·지도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나. 가목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다. 시·군·구관할 공직유관단체 임·직원 및 그 퇴직자
특별시·광역시· 특별자치시·도· 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	가. 시·군·구의 교육장(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3에 따라 국이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제외한다)과 그 퇴직공직자 나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·직위의 별정직·연구직·지도직·장학관·장학사·교육연구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다. 가목 및 나목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라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교육청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·직원 및 그 퇴직자
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	가.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 정무직공무원 및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의회의원과 그 퇴

	직공직자 나. 교육감,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3에 따라 국이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그 퇴직공직자 다.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소속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·직위의 별정직·연구직·지도직 등 공무원,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라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·직위의 별정직·연구직·지도직 등 공무원, 장학관·교육연구관과 그 퇴직공직자 마. 다목 및 라목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바.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
--	---

비고

1.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에는 자치총경(자치경찰단장, 4급 상당)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 및 그 퇴직자를 포함한다.
2. "4급에 상당하는 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"이란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2 제1호다목·제2호나목·제3호가목의 연구관, 별표 2의2 제1호나목·제2호나목·제3호가목의 지도관을 말한다.
3. "3급 이상에 상당하는 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"이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 및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2 제1호가목·나목 및 제2호가목의 연구관, 별표 2의2 제1호가목·제2호가목의 지도관을 말한다.